



양계업의 사업장현황신고

2008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글을 올린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축산업 전문 회계법인으로 지난 한해 양계업자의 힘든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왔기에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계업계의 세무신고 실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조금만 주의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호에는 1월에 있을 사업장현황신고를 대비하여 작년보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9년에 해야 할 세무신고

올해 해야 할 세무신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09년 1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이고, 둘째는 2009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신고' 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양계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할 수 있고,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및 가산세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2. 사업자현황신고의 이유

세무서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하여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농협 등 법인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거래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절대 매출누락 없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 대비 준비할 사항

사업장 현황신고를 대비해 양계업 사업자가 준비할 것은 2008년 1월~12월까지 매출시 발행한 계산서와 사료 등 기타 경비의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의 경우 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여 사업장 현황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 증빙서류 등을 챙기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매출·매입 거래처에 연락을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즉, 일년 동안 관련증빙을 잘 챙기시고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의무

특히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축산업자(이를 복식장부의무자라 함)는 반드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입 및 매출액의 1%를 가

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지 않게 2009년 1월 31일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5. 양계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에 대한 오해

위에서 말했듯이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양계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신고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업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대상자인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시 실수로 1억원짜리 매출 또는 매입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누락신고하면 1억원의 1%인 100만원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라고 '나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계업에 대한 관련 세법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실무를 해보니 양계업, 즉 축산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일선 세무공무원, 일반 세무대리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가산세 등을 내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많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계업의 복식부기의무를 판단시에는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매출이 3억원 이상 된다할지라도 양계업에 적용되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매출액이 3억원 이하가 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6.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물건 등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소득세법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강제하려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반드시 차후에 연락이 와서 사업장현황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7. 사업장현황신고 누락관련 가산세

마지막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와 연관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위에서 말한 누락금액의 1% 가산세, 두 번째는 매출누락의 경우 그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누락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양계업이 힘든 시점에서 세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가산세라는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계획 잘 세우시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

Tip.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을까?

●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을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뱉었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위 사례의 경우 김성실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했으므로 그 상태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김성실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으므로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통산해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 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 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 놓아야 합니다. 갖춰야 할 증빙서류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지만 이 건의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합니다.

-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가정용),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내부 및 외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당해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http://call.nts.go.kr>) ☎ 1588-0060